

인천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9가단2311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담

담당변호사 이대규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솜

담당변호사 강귀석, 최미라

변론 종결2021. 1. 14.

판결 선고2021. 2.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8. 12.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12. 3. 접수 제4391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5. 2.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C를 각 2분의 1 지분 공유자로 하여 2016.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C는 2018.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분의 1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위 C 명의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제1 피보전 채권에 관한 주장

C는 원고 조합의 대출담당자로서, 2015. 5. 12.부터 2017. 2. 28.까지 채무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무자의 명의로 10,978,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위와 같은 부정대출이 D단체의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었고, D단체는 위 대출실행에 대하여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그럼에도 C는 2017. 6. 19. 동일인 대출한도초과건에 관하여 소송대리인 보수 지출에 관한 기안서를 작성하였고, 2017. 6. 21. 원고 조합의 계좌에서 범무법인으로 22,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7. 12. 29. 같은 범무법인으로 2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C의 범무법인에 대한 송금행위는 자신의 징계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행위로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C는 원고에게 위 44,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이하 '제1피보전채권'이라고 한다).

나. 제2 피보전채권에 관한 주장

C는 2017. 9. 8.부터 2017. 12. 22.까지 주택건설자금을 대출하는 과정에 대출채무자로부터 대출금지급위임장을 받아 시설공급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E조합 여신업무방법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자에게 대출금을 직접지급하고, 기성고 확인 없이 기성자금 대출을 하였다. D단체는 2018. 8. 14.부터 2018. 8. 17.까지 위 대출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D단체는 원고에게 위 대출 책임자인 C를 징계면직 및 변상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C는 2018. 12. 31.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률용역을 위한 변호사 보수 30,000,000원을 원고의 자금으로 법무법인에 송금하였다. 이러한 C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C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이하 '제2피보전채권'이라고 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는 C에 대하여 제1, 2피보전채권을 갖는다. C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동담보 부족으로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라. 채권자 대위 청구

C와 피고가 2016. 8. 2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피고 명의로 마쳐진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소유 명의를 피고로 한 것이나, 실질은 C의 자금으로 피고의 명의를 빌려 구입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C는 무자력인바, 원고는 C에 대한 제1, 2피보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대위하여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3.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C에 대한 제1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2020. 4. 20. 원고의 C에 대한 제1피보전채권의 근거가 된 법무법인 선임행위에 관한 업무상횡령 고소사실에 대하여 C의 법무법인 선임행위는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한 바 있다.

나. 이 사건 제2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C에 대한 제2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인천지방법원은 2020. 10. 21. 2020고단799호로 C의 제2피보전채권의 근거가 된 법무법인 선임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 등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법률자문계약 또한 D단체의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내용이며, C와 법무법인 사이에 별도의 개인적인 변호인선임계약이 존재하는 이상, 위 법률자문계약이 C를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실, 또한 원고가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00008) 사건에서 원고는 제2 피보전채권의 근거가 되는 변호사 선임행위가 업무상횡령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C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위 변호사 선임행위(법률용역계약)가 임의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1.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제1, 2 피보전채권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한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이므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참조), 이 사건 청구 중 원고가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소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 청구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채권자대위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채권자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태환

별지